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_ , , , , -				
등기번호	094534			
등록번호	121111-0270488			
상호 -				
Ž	2020.09.14 변경 2020.09.15 등기			
본 점 -				
<u> </u>	2017.03.31 변경 2017.04.11 등기			
<u> </u>	2019.03.06 변경 2019.03.06 등기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4				
	100,000		Ò	2017.08.22 변경 2017.08.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2,000 주 2,000 주	금 10,000,000 원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22,000 주 22,000 주	금 110,000,000 원	2017.08.23 변경 2017.08.28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22,000 주 10,780 주		2022.08.30 변경 2022.08.30 등기
상환전환우	선주식	11,220 주	금 110,000,000 원	
4 -1-1-1-1	ا جال جا	목	적	

- 1. 전자상거래업
- 1. 가정용품, 생활용품 종합 도소매업(통신판매, 점포판매)
- 1. 음식료품, 의류, 가전, 가구 도소매, 중개 및 위탁 판매업
- 1.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
- 1. 건축 및 전시관련 기획 서비스업
- 1. 제품디자인서비스 및 디자인컨설팅업
- 1. 프랜차이즈운영업

094534

- 1. 가죽, 가방등 유사제품 제조 및 유통업
- 1. 인쇄, 출판업
- 1. 문구용품 도소매업 (종이,인쇄물포함)
- 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유통업
-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유통업
- 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유통업
- 1.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유통업
- 1.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유통업
- 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유통업
- 1. 가구 제조,유통업
- 1.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유통업
- 1. 창고업
- 1. 숙박시설 운영업
- 1. 요식업
- 1.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1. 공연시설 운영업
- 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종합도소매업(수출입)
-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진중헌 7911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40, 901동 2601호(중동, 위브더스 테이트)

2014 년 06 월 03 일 취임 2014 년 06 월 03 일 등기

사내이사 진중헌 7911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11, 102동 704호(중동, 해운대 에스케이뷰)

2014 년 12 월 03 일 주소변경 2014 년 12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진중현 7911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11, 101동 702호(중동, 해운대에스케이뷰)

2017 년 03 월 02 일 주소변경 2017 년 04 월 11 일 등기

2017 년 03 월 31 일 사임 2017 년 04 월 11 일 등기

감사 이우성 861219-******

2014 년 06 월 03 일 취임 2014 년 06 월 03 일 등기

2017 년 03 월 31 일 중임 2017 년 04 월 11 일 등기

2020 년 03 월 31 일 중임 2020 년 04 월 10 일 등기

2022 년 05 월 10 일 사임 2022 년 05 월 16 일 등기

사내이사 진중헌 7911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11, 101동 702호(중동, 해운대에스케이뷰)

2017 년 03 월 31 일 취임 2017 년 04 월 11 일 등기

사내이사 진중헌 7911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94, 301호(중동, 디마크 하우스)

2019 년 08 월 23 일 주소변경 2019 년 09 월 19 일 등기

등기번호		1534									
P	년 03 월			2020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경											
l .			주소삭제								
			사임	2023	년	04	월	03	일	등기	
감사 정두역	-									_ ,	
• • • • • • • • • • • • • • • • • • • •			취임		<u>년</u>	05	월	16	일	둥기	
기타비상무										_ ,	
			취임						•••••		
		—									973년 12월 30일생
			취임								
			사임								
대표이사 진중헌 7911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94, 301호(중동, 디마크											
하우스)											
			취임								
			사임		년	04	월	03	일	등기	
기타비상무		-									
		·····	취임	2023	년	04	월	03	일	등기	
사비이사											
2023 닉	년 03 월	21 일	취임	2023	년	04	월	03	일	등기	
			해임								
대표이사 여	1용진 81 2	1209-***	**** 부산	광역시	해-	운대	구 .	좌동	순환	<u> 로4</u> :	33번길 20, 102동 3004호(중동,
해운대 힐											
2023 ਪ੍ਰ	년 03 월	21 일	취임	2023	년	04	월	03	일	등기	
2023 ધ	년 11 월	24 일	해임	2023	년	12	월	22	일	등기	
기타비상무					T	۲,	-			4	
2023 \	현 03 월	21 일	취임	2023	년	04	월	03	일	등기	
2024 \	현 01 월	11 일	사임	2024	년	01	월	15	일	등기	
사내이사 ラ	개나다국인] 조고든	엘리어트(CHO GC	RDE	V EL	LIO	TT)	1973	3년 :	12월 30일생
			취임								
대표이사 🤊	비나다국인	<u> </u>	엘리어트(CHO GC	RDE	V EL	LIO	IT)	197	3년 :	12월 30일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112	동 105호	(돈암동,	한신이	파트	-)					
	년 12 월			2023			월	22	일	등기	
	년 01 월			2024							
사내이사 점											
2024 4	년 01 월	11 일	취임	2024	년	01	월	15	일	등기	
											번가길 94, 301호(중동, 디마크
하우스)											
2024 \	년 01 월	11 일	취임	2024	년	01	월	15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건 및 내용

094534

I. 주식종류변경 대상 보통주식의 수

주식종류변경 대상 보통주식 수 11,220주

지분율 51.0%

- II. 주식종류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우선주")의 조건 및 내용
-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루메나 (이하 "대상회사")

2. 액면가

주당 5,000원

- 3. 주식종류변경으로 변경되는 보통주식의 수
- 11.220주
- 4. 주식의 종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 6. 배당 및 잔여재산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배당:
- (a)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2.5%(이하 "우선배당률")로 한다.
- (b)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즉, 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즉, 누적적 우선주). 대상회사는 본 조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기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 (c)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률은 위 (a)호와 같으며,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단,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 지급).
- (d) 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는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e) 대상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 보유 주 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잔여재산: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 (a)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i) 1주당 발행가액과 (ii) 잔여재산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이하본 (a)호에 따라 지급되는 분배액을 "우선분배액").
- (b) 잔여재산이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
- (c) 보통주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보통주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이 경우 본건 우선주는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
- 7.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

094534

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전환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다.
-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상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3) 전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금 5,454,545원이다. 전환가액은 아래 제(4)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 (4)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 (a)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대상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 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 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 (b) 본건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c)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대상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T)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 * T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 *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1주당 발행가격은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 * 기준가는 대상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항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d) 대상회사의 2022년,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각 확정 재무제표상 EBITDA가 각 연도별 아래 표의 금원(이하 "목표경영실적")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목표경영실적>

[연도] | [EBITDA]

2022년 | 154억원

2023년| 188억원2024년| 208억원2025년| 233억원

대상회사의 2022년 확정 재무제표상 EBITDA가 목표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환가 액은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를 전액 보통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보유하게 될 지분의 가치(이하 "기준지분가치")가 612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가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명확히 하면, (i) 대상회사의 100% 지분가치(본건 주식매매계약상 대상주식의 1주당 매매대금 x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순부채'를 차감하여 대상회사의 '기준기업가치'를 산정하고, (ii) 해당 '기준기업가치'를 '목표경영실적'으로 나누어 'EV/EBITDA배수'를 산정한 후, 그 '동일한 배수(EV/EBITDA 배수)'를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실제 EBITDA'에 적용하여 실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해당 값에서 '순부채'를 차감하여 100% 지분가치산정한 후, (iii)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기준지분가치가 612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 * EBITDA: '영업이익에 유형, 무형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EBITDA 금액(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의 의견을 받은 대상회사의 2022년 감사보고서상에 기재된 EBITDA를 의미함)'에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 5억원 이내에서 2022년 발생한 비용 중일부를 전환가격 산출시 위 EBITDA 금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 * Net Debt (순부채): '장·단기차입금, 사채 등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에서 '현금(현금 성자산을 포함함),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매매증권'과 '주주간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거 래종결일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투자자에게 차등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의 의견을 받은 대상회사의 2022년 감사보고서상에 기재된 수치에 의함)
- 대상회사의 2023년, 2024년 또는 2025년의 어느 확정 재무제표상 EBITDA가 해당 연도의 목표 경영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위 제(3)항에서 정한 최초 전환가액으로 조정된다.
- (e) 대상회사의 기업공개시 본건 주주간계약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적격상장을 위한 가격조건(이하 "적격상장 가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환가액은 매수인이 주당 IRR 12%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명확히 하면, (i) 본 항에서 '적격상장 가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란 어느 기업공개 절차의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위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 범위의 최하단 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값이 주당 투자원금에 IRR 12%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ii) IRR은 본건 주주간계약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 (5) 전환절차: 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게 1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 (6) 전환청구 기간: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전환청구 절차: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청구서 2통에 주권(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위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094534

- (8) 전환의 효력발생: 보통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 (9) 수권주식의 수: 대상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존속하는 동안 본건 우선주에 관한 전환권을 수시로 행사하기에 충분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의 수를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 (10)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대상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 8. 상환에 관한 사항
- (1) 상환권자: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아래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상회사에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상환기간, 상환가액:
- (a)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b) 상환가액: (i) 본건 우선주 1주에 대한 매매대금 및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일로부터 실제 상환가액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IRR 8.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IRR은 본건 주주간계약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 (3)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4) 상환방법: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상환의 의사, 상환대상 본건 우선주의 수 및 행사연원일을 기재한 서류(이하 "상환권행사통지서")를 대상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상환권 행사"). 상환권 행사가 있는 경우 대상회사는 해당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게 상환권행사통지서 상의 행사연월일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이하 "상환기일") 상환권이 행사된 수의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상환가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5) 지연이율: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가 본 조에 따라 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해당 상환기일에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상환가액 및 해당 금액에 해당 상환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15% 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2 년 08 월 30 일 설정 2022 년 08 월 30 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1.본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범위내에서 상법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선정기준이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수 없고,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할수 없다.
 - 3.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09453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 6 조의7 제2항 제1호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주가 나.당해주식의 권면액
- 2)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최대주주(상법제 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 인을 말한다.이하같다)다만,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 자(그 임 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과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
 - 다만,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댕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자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토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에 배당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의 규종을 준용한다.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 1)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
 - 2)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 하게 한 경우.
 -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0 년 12 월 01 일 설정 2020 년 12 월 02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4 년 06 월 03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14년 12월 0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8, 306호(중동, 다운타운)으로부터 본점이전

2014 년 12 월 05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094534

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5월16일 11시21분08초